

날짜 : 2018 년 9 월 20 일

수신기관 : 유엔 인권이사회

발신인 : 나가오 히데미(長尾 秀美), 연금 생활자, 소설가, 논픽션 작가

주제 : 위안소 수와 위안부 수에 관한 사실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정한 판단을 요청

첨부 : 위안소 수와 위안부 수에 관한 사실의 제시

1. 구 일본제국 육군 및 해군은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지에 만들어진 위안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위안소에서 일하던 여성은 위안부라 불렸습니다. 이들 여성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1990 년대 초반부터 위안부 문제로서 일본, 한국, 중국 등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몇번이나 유엔에서도 거론되었고, 몇몇 인권 침해 분석 보고서의 주장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 의뢰는 일본이 저지른 잘못을 호도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본이 과거에 제정한 공창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 첨부 문서의 사실 및 추정되는 사실에 근거하여 귀 이사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평한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를 재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 2018 년 8 월 30 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보고서(CERD/C/JPN/CO/10-11)을 발표했습니다. 동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제 27 및 28 단락에서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거에도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 같은 취지의 우려와 권고가 표명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4 년 8 월 29 일의 동위원회 보고서(CERD/C/JPN/CO/7-9) 의 제 18 단락, 2008 년 12 월 18 일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 보고서(CCPR) 2008 (CCPR/C/JPN/CO/5)의 제 22 단락,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 (CEDAW 2003 362) 의 제 361 및 362 단락 등이 있습니다.

4. 권고의 전제가 되고 있는 아래 2 개의 분석 보고서는 언뜻 보기에는 역사상의 일본의 행위나 행동에 대해 법적 해석의 관점에서 흠잡을 데 하나 없이 상술하고 있습니다. 허나 그 본문에는 몇가지 기본적인 사실이 불충분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보고서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인용한 위안부 증언록은 당시 일본이 제정한 공창 제도의 실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출판된 이 증언록은 위안부의 실태를 밝히수 없습니다.

4.1: 유엔 인권위원회(현 이사회)에 제출된 크마라스와미 보고서 「E/CN.4/1996/53(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 보고서)」에는 일본에서 제정되고 조선에도 도입된 공창 제도의 실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크마라스와미 여사가 보고서 중 특히 제 11 에서 14 단락 및 19 에서 20 단락까지 사이에서 이 제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귀 인권위원회(현 이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 제도는 조선에서도 1908 년부터 최소 1945 년까지 시행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명목상으로만 공포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공창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동 보고서는 아래 첨부 문서에서 명백히 알 수 있듯이, 중대한 사실 오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2: 유엔 인권위원회(현 이사회)에 제출된 맥두걸 보고서의 부속 문서

「E/CN.4/Sub.2/1998/13」의 제 1 단락은 아시아 각지의 강간 시설에는 20 만명을 넘을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노예화되어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맥두걸 여사는 이 보고서에서 91 개의 문헌을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정된 숫자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서적, 문서, 성명 등을 전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20 만명 이상이라는 일반인에게 충격적인 이 숫자는 추정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의 기술에 합리성이 없다는 것은 아래 첨부 문서를 정독하면 밝혀질 것입니다.

4.3: 20 여명의 조선인 위안부와 면담하고나서 사람들은 그들의 증언록을 서적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들의 체험에만 집중하여 초점을 맞춘 결과, 면담자는 당시 조선에서 시행되고 있던 공창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첨부 문서(1)는 위안부를 둘러싸고 있던 환경이 과연 어떤 것이 었던지 밝히고 있습니다.

5. 이상의 이유로 귀 이사회가 지금까지 표명한 권고를 일괄 재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가오 히데미(長尾 秀美)

주소 : 일본국,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니시구 쿠보초 45-21

전화 : 81-90-6305-0449

## 첨부 문서

### 위안소 수와 위안부 수에 관한 사실 제시

목차

- I. 관련용어
- II. 한반도의 공창제도
- III. 위안소 수와 위안부 수
- IV. 위안부에 관한 사실
- V. 맺는 말

참고문헌

위안소 수와 위안부 수의 추정에 관해서는 주로 아래의 자료들을 참조했다.

자료 A : 『일본군 「위안부」 관계자료 수집 <상> <하> (스즈키 유코, 야마시타 영애, 소토무라 다이 편』 (2006 년, 도쿄, 아카시 서점) (주 : 이 자료는 자료 B에 포함되어있는 수기 문서를 활자체로 인자하고 관련 자료와 고찰을 더한 것)

자료 B : 『정부조사 「중군 위안부」 관계자료 수집 ①~⑤』 (1998 년, 도쿄, 류케이쇼샤(龍溪書舎) (주 : 이 자료는 정부 등이 보존하고 있는 위안부 관련 문서를 복제한 것이며 수기 문서를 포함)

자료 C : 사쿠마 테츠 “남해의 위안소 (라바울, 팔라우, 트럭, 마리아나 제도)”, “닛폰 리포트 - 중군 위안부에 대해 알아보기 편 중군 위안부의 체험담 등 메모, 1-7 및 9-12” (출처:

웹 사이트, 남해의 위안소 (라바울, 팔라우, 트럭, 마리아나 제도)( [satophone.wpblog.jp/?p=2886](http://satophone.wpblog.jp/?p=2886)), 2018년 3월 8일 열람 개시) (주 : 이 자료는 주로 내 남양과 관계된 추억, 자전, 평론 등을 읽고 그 저자명과 위안소나 위안부를 인용한 부분을 뽑아내어, 원본 페이지 번호를 기재한 것)

**자료 D <상> <하> : 『증언 - 미래의 기억 - 아시아 「위안부」 증언집 I, II - 남·북·재일 코리아 편』** 액티브 뮤지엄 「여자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편, 니시노 루미코, 김 부자 책임 편집(2010년, 도쿄, 아카시 서점) (주 : 이 자료는 위안부 25명의 증언을 청취한 것)

**자료 E : 『증언 -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993년, 도쿄, 아카시 서점) (주 : 이 자료는 당초에 이름을 밝히고 나선 110명의 위안부 중에서 정식으로 면담을 진행한 19명의 증언을 청취한 것)

그 외 참고 문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인용했다. 자료 중의 문서를 인용할 때 오래 된 글말은 필요에 따라 필자의 책임으로 글을 현대어로 고치거나 또는 (\*)내에 보충 설명을 덧붙였다. 밑줄은 주의환기를 위해서 필자가 그은것이다.

## I 관련 용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의 자료에서 뽑은 위안부 관련 용어를 열거하여 매매춘 역사의 일부를 되돌아본다.

위안소 : 전지(戰地)에 설치된 매매춘 시설

업주 : 공창(취업부녀)의 포주, 고용주

취업 : 공창으로서 매춘을 하는 행위

취업부녀 : 기녀, 특수부녀, 취업부, 창기, 창부, 을중예기, 제 2 종예기, 작부, 을중작부, 기생(일패, 이패, 삼패), 갈보, 은군자 등 취업을 일삼는 여성

대좌부 : 특별요리집, 특별요리점, 을중요리점, 제 2 종 요리점, 중국의 한커우(漢口)서는 낙호(樂戶), 육군에서는 빼야, 해군에서는 레스(구 일본 해군에서 사용된 은어로, 요리집을 가리킴) 등으로, 취업부녀가 영업을 한 건물, 조선에서는 객주, 주막, 상화실 등 사창이 영업을 한 건물도 포함

예기 : 춤과 노래 등으로 주연석에서 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 게이샤, 게이꼬. 단, 구분이 애매할 때도 있었다. (출처 : 코토뱅크, 2018년 3월 8일 열람, <https://kotobank.jp/word/예기-488297>)

공창 : 경찰당국에 등록된 취업부녀

사창 : 경찰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매춘부

지정구역·지역, 제한구역·지역 : 대좌부에서의 영업이 허가된 곳

## II 한반도의 공창제도

### 1. 매춘단속

자료 A의 편집자의 한명인 야마시타 영애는 일본이 조선에 공창제도를 도입한 과정을 3 개 시기로 나누었다(자료 A <상>, 675 쪽).

제 1 기 :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후

제 2 기 : 1905년 통감부 설치후

제 3 기 : 1916년 대좌부창기단속규칙 발포후

조일수호조규 체결후,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고, 서울과 용산에도 출입이 허가되면서,

일본인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다. 양국 무역이 발전함과 동시에, 일본인 거주지에서는 일본인 예창기가 영업을 시작했고, 그들에 대해 감찰(鑑札)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자료 A <하>, 675 쪽).

일본은 왜 이 감찰제도를 조선에 도입한 것인가? 그것은 에도시대 때부터 유곽이 번영했고, 동시에 사창이 있었으며, 막부(幕府)는 이들에 대해 단속을 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제 1기 직전에 일본이 아래와 같은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근대 공창제도는 1872(메이지 5)년, 태정관달 295 호(즉 「창기해방령」)을 획기로 전근대의 그것과 단절하는 모양새로 재구성된 매춘통제정책이며, 창기가 신고를 함으로써 취업허가를 내어주고 일정한 제한구역(대좌부 지정지)에서만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출처 : “인신매매배제” 방침으로 보는 근대 공창제도의 양상 『리츠메이칸 대학 인문과학 연구소 학술지 NO.93』 (2009년 3월) 특별연구원 마수기 유리(眞杉侑里), 237 쪽)

한편, 조선사회에도 성매매 관습이 있었고 조선왕조시대 말기에는 여러 등급의 매음부가 있었으나( 자료 A <하>, 677 쪽), 조선인 매춘부에 대해서는 일본당국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일본이 실질적으로 조선에 대해 통치를 시작한 제 2기가 되어서 조선총감부(후일의 조선총독부)는 그 필요를 느껴, 1908년에 경시청령으로 「기생단속령」과 「창기단속령」을 발부하고 조선인 매춘부의 영업을 경찰당국의 허가제로하여 관리를 시작했다(자료 A <하>, 677 쪽).

제 3기인 일한병합후의 1916년 3월 31일에는, 경무총감부가 조선 전체의 매춘단속을 통일하기 위해 여관영업, 요리점과 음식점, 예기 등과 예기포주집, 대좌부를 단속하는 4가지 법령을 발포해, 5월 1일부터 이를 실시했다(자료 A <하>, 680 쪽). 각 행정구는 각 규칙에 따라 지역을 정하고, 영업을 허가했다. 그 수는 아래와 같았다(자료 A <상>, 583~641 쪽).

함경북도(2), 함경남도(5), 평안북도[\*도의 문서에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대좌부, 예기·창기·작부에 대한 기재가 있다(자료 A <상>, 696-697 쪽)], 평안남도(10), 황해도(1), 경기도(3), 강원도(\*위와 동일함), 충청북도(\*위와 동일함), 충청남도(1), 전라북도(3), 전라남도(13), 경상북도(2), 경상남도(19)

또한, 경찰당국에 등록된 일본인 공창과 조선인 공창의 수는 1910년에서 1942년까지의 기록이 남아있고, 최후의 3년은 아래와 같다(초)(자료 A <상> 「接客업계의 통계」, 779, 783~786 쪽).

		예기	창기	작부	카페·바 여급	합계
1940(쇼와 15)년	일본인	2,280	1,777	216	2,226	6,499
	조선인	6,023	2,157	1,400	2,145	11,725
1941(쇼와 16)년	일본인	1,895	1,803	292	1,893	5,883
	조선인	4,828	2,010	1,310	1,998	10,146
1942(쇼와 17)년	일본인	1,797	1,774	240	1,644	5,455
	조선인	4,490	2,076	1,376	2,227	10,169

## 2. 예기, 창기, 작부의 상황

상기 법령은 성병방지나 관계자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예기 등의 신분과 권리를 또한 명확히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당국의 의도가 여성을 성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 필자는 그 중 2개의 요점만을 정리해서, 호·항 번호를 추가했다.

(1)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령 제 3 호 ‘예기작부예기치옥영업단속규칙’ 1916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관보 1916.3.31 (초) (자료 A <상>, 615~616 쪽)

예기(기생을 포함) 또는 작부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본적과 이름, 영업지 주소 등을 기재한 원서에 아래의 서면을 첨부하여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것. 1,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의 승낙서, 그 외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부양의무자 등의 승낙서 2, 승낙자의 인감증명서 3, 호적등본 또는 민적등본 4, 경력 및 예기 또는 작부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 5, 건강진단서

(2)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령 제 4 호 ‘대적부창기단속규칙’ 1916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관보 1916.3.31 (초) (자료 A <상>, 619~622 쪽)

대좌부 업주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것이며 아래 항목을 준수할것. 1, 창기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변경하지 않을것. 2, 창기에게 괜한 지출을 요구치 않을것.

대좌부 업주는 창기마다 대차계산부 2 부를 제작하고, 그중 1 부는 창기에게 교부하고 매월 3일까지 전월분의 대차에 관한 계산을 상세히 기재하여 창기와 함께 날인할 것.

17세 미만인 자, 창기취업 또는 전차금(前借金)에 관한 계약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치 않는다

상기 공창제도가 정착하고, 일본군이 외지 주둔지 근처에 위안소 설치를 필요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통첩안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 통첩안은 청부현(淸州府)장관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출정하는 육군 부대가 일본 국내 각 지역별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한커우(漢口)에 파견된 아마야(天谷)부대는 카가와(香川)현으로부터 였다. 따라서 동현의 업자는 공창을 모집해 시나로 인솔하는 허가를 현지사에게 신청을 했다(자료 A <상>, 187, 188 쪽).

1938년 2월 18일 시나도항부녀(支那渡航婦女)의 취업에 관한 건, 내무성 경보국장 ‘청부현장관완(淸州府長官宛) 통첩안’ (초) (자료 A <상>, 124~130 쪽)

1,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의 도항에 대해서는, 현재 내지에서 사실상 취업에 종사하며 만 21세 이상이고 성병이나 다른 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한 자로서, 복지, 중지 방면에 가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당분간 이를 묵인하며, 쇼와 12(1937)년 8월 미 3기밀합제 3376 호 외무차관통첩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2, 취업의 임시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는 귀국하도록 미리 설득한다. 3, 상기 목적으로 도항하는 자는 반드시 본인이 경찰서에 출두하여, 신분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4, 그에 앞서 동일 호적내의 부모 등의 승인이 필요하다. 5, 또한 조사를 하여 부녀매매 또는 약탈유괴의 사실이 없는지 유의한다. 6, 모집주선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해, 정규 허가나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가 없는 자와 신분이 확실치 않는 자에게는 허가를 하지 않는다.

상기 통첩안은 1938년 2월 23일, 내무성발경제 5호(內務省發警第5號), 시나도항부녀의 취업에 관한 건(초)으로, 내무성 경보국장으로부터 각 청부현 장관앞으로 정식 통달 되었다(자료 A <상>, 138~139 쪽).

이를 바탕으로 주선업자는 취업 여성과 그 천권자에 대해, 보통 아래와 같은 계약서, 승낙서, 금전차용증서, 계약조건을 제시해 공창(公娼)을 모집했다(자료 A <상>, 128~132 쪽).

계약서 : 1, 취업기한. 2, 계약금. 3, 상여금은 매상의 1할(단, 반은 저축할 것). 4, 식비와 의상, 침구 등의 소모품과 의료비는 포주가 부담한다. 5, 취업인·연대보증인의 서명. (\*저축은 우편(郵便)지금을 뜻함).

승낙서 : 친족의 승낙서·취업 동의문

금전차용증서 : 금액 및 이를 상환한다는 내용과, 차용인·연대보증인의 서명.

계약조건 : 1, 계약기한. 만 2년. 2, 전차금 500~1000 엔(단, 전차금의 2 할을 공제하여 소지금 및 여비에 충당할것). 3, 전차금 상환방법은 기한이 만료됨과 동시에 소멸된다. 즉, 계약기간 동안 설사 병으로 인해 휴직을 했다고 해도, 기한이 만료되면 전차금은 완제된다. 4, 이약금. 5, 계약기한이 만료되어 귀국할 때는 귀환 여비를 포주가 부담한다. 6, 계약기한을 무사히 마친 경우에는 본인의 매출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상기와 같이 주선업자의 계약서에는 저금에 대한 언급이 있다. 악덕업자가 종업원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위험한 일에 종사하도록 한다든지 긴 시간의 로동을 하게끔 하는 요즘같은 현실도 있지만, 이 저금은 공창(公娼)을 위한 것이다. 말레이(현재의 말레이시아)군정감(軍政監)은 1943년 11월 11일, **위안시설 및 여관 영업준수규정 제정의 건들(초)**에 있어서 아리와 같은 규정을 정하였다(자료 A <상>, 433~438 쪽).

1, 취업부녀의 취업에 의한 수입금에서 강제저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취득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한다.

취업부녀의 매출에 대한 배당 비율:

채무 잔액	고용주 소득	본인 소득
1500 엔 이상	6 할 이내	4 할 이상
1500 엔 미만	5 할 이내	5 할 이상
무차입	4 할 이내	6 할 이상

2, 전차금과 다른 빚은 모두 무이자로 한다.

3, 고용주는 취업부녀의 매달 매상의 3%를 지방장관이 지정한 우편국에 취업부녀 본인의 명의로 저금을 하고 취업부녀가 폐업할 시 본인에게 교부한다.

상기 규정은 1943년에 말레이시아에서만 갑자기 게다가 처음으로 발령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만도 공창 관련 규칙의 실시는 1916년이후로 27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 III 위안소 수와 위안부 수

#### 1, 추정작업

##### (1) 연혁

공창을 둔 위안소가 외지에 설치되는 계기는 1932년초에 일어난 상해사변이라 알려져 있다. 일본과 중화민국이 휴전협정에 조인한 후에도 해군부대가 상해 현지에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그해 연말까지 사이에 해군 위안소가 설치되었다(출처 : 자료 A <상>, 28, 119 쪽, <하> 628 쪽 ). 이를 발단으로 육군도 해군도 연이어 중국 주둔부대를 위해 위안소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출처 : 자료 A <하>, 628, 629 쪽). 그로부터 일본은 물론, 한반도로부터도 업주가 공창을 인솔해 중국으로 도항하게 되었다. 외지 위안소의 공창이 특수부녀, 특수부인, 특수위안부 등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 뒤로부터였다(출처 : 자료 A <상>, 42, 178, 328 쪽)

##### (2) 설치장소

자료 A-C에는 위안소가 있었던 곳의 도시 이름이 기재된 경우와, 그 장소에 주둔했던 부대 이름만 기재된 경우가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부대의 이동 등을 조사해서 장소를 추정했다.

또한, 위안소의 수를 알기 위해 아래와 같은 2개의 가설을 세웠다. ① 위안소 관련 문자를 포함한 문서가 기초(起草)된 장소에는 적어도 하나의 위안소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② 상해사변 후인 1933년 이후에 작성된 문서에 지명이나 위안소가 언급되어있는 경우, 전황이 안정되어있다고

보고, 1941년 12월 8일 이후에도 그곳에 위안소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 (3) 위안소 한 곳당 위안부의 수

자료 A-C에는 위안소에 있었던 위안부의 수를 명기한 문서보다는 구체적인 숫자가 적혀있지 않은 문서가 더 많다. 따라서 1940년의 **료집단특무부월보(呂集團特務部月報)(제 7 호 통권제 17 호) 난창(南昌)시정부경비처의 낙호(유곽)공창단속 및 영업세징수 집행규정**, ‘제 5 조 각종 낙호의 소유 공창은 10 명 미만으로 한다’ 라는 기술을 참고로 하였다(자료 A <상>, 243~247 쪽).

## 2, 결과

여러 자료로부터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당연히 아래 숫자에는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중국인 및 동남 아시아인이 포함되어 있다. 단, 위안소가 설치되었던 장소에 대해서는 일본(오키나와를 포함), 한반도, 만주, 대만을 제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기 장소들은 전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료 A <상> : 위안소 377 곳, 위안부 4038 명 (\* 중국 본토에서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자료 B⑤ : 위안소 68 곳, 위안부 738 명 (\* 중국 본토에서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자료 C : 위안소 59 곳, 위안부 699 명 (\* 특히 내남양(內南洋) 관련)

단, 자료 A <상>과 자료 B⑤에서 미안마 (13 곳 130 명)에 대한 기술이 중복된 것을 감안하여, 총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추정수 : 위안소 491 곳, 위안부 5345 명**

상기 총수는, 자료 A-C에는 기술이 없고, 자료 D 및 E에서만 언급된 위안소 수와 위안부 수를 산입하지 않았다. 증언 자체에 모호한 부분이 많고 추정 총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3, 병사와 위안부의 비율

위안부 수를 추정할때, 유식자는 병사 30~150 명당 위안부 1 명이라는 가설하에 총수를 41~2 만명이라고 한다(출처 : 웹사이트, 디지털기념관, 위안부문제와 아시아 여성기금 - 위안소와 위안부의 수 (<http://www.awf.or.jp/>), 2018년 3월 10일 열람). 한편, 1939년 4월 15일의 **의무국장과정 회보의 하집단 마츠무라 군의부장 보고(松村波集團軍醫部長報告)**(자료 A <상>, 146 쪽)에는 ‘성병 예방을 위해 100 명당 1 명꼴로 위안부를 수입(輸入)한다’ 고 했다.

예서는 1942년 2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의 **육군성업무일지적록, 육군성의무국 의사과장(醫事課長) [9월 3일과장회보]**(자료 A <상>, 308 쪽)에서 온쇼(恩賞)과장이 ‘장교 이하의 위안 시설을 다음과 같이 만들고 싶다’ 고 했고, ‘북시나에 100 개, 중시나에 140 개, 남시나에 40 개, 남방에 100 개, 남해에 10 개, 가라후토(樺太)에 10 개로 총 400 곳’ 이라고 한것을 인용했다. 동 문서를 읽어 내려가면, 온쇼과장이 1942년 9월 3일 시점에 전지 위안소의 수를 산정해, 그 뒤로 출정할 병사수의 증가를 미리 내다보고, 400 곳로 충분하다고 예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같은해 6월, 해군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패한 것과 해군의 전투 지속능력 저하의 의미에 대해서 통보받지 못하였던 모양이다.

이상의 지표를 근거로, 각 비율이 실태에 걸맞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위안소 한곳당 위안부의 수는 아래와 같이 추정되었다.

① 위안소의 수가 400 개였을 때,

$$20,000 \text{ 명} \div 400 \text{ 개} = 50 \text{ 명}$$

$$200,000 \text{ 명} \div 400 \text{ 개} = 500 \text{ 명}$$

$$410,000 \text{ 명} \div 400 \text{ 개} = 1,025 \text{ 명}$$

② 위안소의 수가 491 개였을 때,

20,000 명 ÷ 491 개 = 41 명

200,000 명 ÷ 491 개 = 407 명

410,000 명 ÷ 491 개 = 835 명

③ 위안소의 수가 1,000 개였을 때,

20,000 명 ÷ 1,000 개 = 20 명

200,000 명 ÷ 1,000 개 = 200 명

410,000 명 ÷ 1,000 개 = 410 명

#### 4, 상기 결과의 합리성

한 곳당의 위안부 수 50 명~20 명은, 어찌 보면 납득이 될만한 숫자이다. 그러나 자료 A-C 를 보면, 위안부의 수가 제일 많기로는 인도네시아 스마토라섬 남부의 팔렘방에 4 곳으로 총 120 명(자료 A <상>, 212 쪽)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스마토라섬의 현재의 아체 특별자치주의 반다아체의 크다라자(Kutaradja)에 한 곳으로 28 명(자료 C, 536.7)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도 한 곳에 20 명 정도도 중국 한커우(漢口)에서나 볼 수 있었다. 즉, 한 곳에 30 명 좌우는 예외라고 볼 수 있다.

확실히, **일독전역헌병사(日獨戰役憲兵史)(초)** 1917 년 9 월의 문서에는 칭다오(靑島)에 일본인 대좌부가 9 곳 있었고, 작부는 348 명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자료 A <상>, 10~13 쪽). 만약 사실이라면 한 곳당 39 명 좌우를 데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문서는 날짜가 너무 오래돼서 예외 중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상기 계산에서 위안소의 수 1000 곳을 의도적으로 덧붙였다. 이는 한 곳당 20 명이라는 답을 얻기 위함이었으나, 이 1000 곳이 실패에 어울리려면 가능성은 단 하나밖에 없다. 공창을 거닌 491 곳의 위안소에 대해, 일본군 주둔지 옆에 사창이 영업을 하는 매춘 숙박이 509 곳이나 있었다면 가능하다.

상기 2 에서 추정된 위안소 491 곳과 위안부 5345 명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위안소 한 곳당의 위안부수는 10.9 명이 된다. 이 숫자는 상기 1. (3)에서 응용한 1940 년의 료집단특무부월보(呂集團特務部月報)(제 7 호 통권제 17 호) 난창(南昌)시정부경비처의 낙호(유곽)공창단속 및 영업세징수 집행규정, ‘제 5 조 각종 낙호의 소유 공창은 10 명 미만으로 한다’ 라는 숫자에 가깝다. 따라서 위안소 491 곳과 위안부 5345 명은 합리적인 추정치라고 볼 수 있다.

#### 5, 위안부의 교대율

위안부의 수에 대해서는 그녀들의 교대율을 고려하는 유식자도 있다(출처 : 『「위안부」 문제와 아시아 여성기금』 2007 년 3 월,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10 쪽). 하타 이쿠히코(秦育彦) 씨와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씨 등은 교대율을 1.5 나 2.0 으로 하고 있다.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든지 고용이 끝나 귀국한 위안부들을 보충해, 예를 들어서 1940 년 6 월 현재에 가령 2 만명의 위안부가 있었다면 3 년 후인 1943 년 6 월에는 위안부 총수가 3 ~ 4 만명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었다. 창기 계약이 3 년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추정된 위안부의 수 5345 명에 교대율을 1.5 로 계산하면, 약 8017 명이 되지만, ①전쟁때문에 위안소가 폐쇄됐다든지, ②개인사유로 위안부가 위안소를 전전했다든지, ③위안부가 수입을 얻기 위해 공창을 계속했다든지 등을 고려하면, 교대율의 타당성에 다소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위안부가 강제 연행된 성 노예였다는 주장은 교대율의 도입에도 의미가 있는것인가.



업주는 병, 영양 불량, 학대 등으로 사망한 성 노예를 당연히 보충하겠지만 성 노예에게는 계약도 고용기한도 없다. 따라서 10 명의 성 노예를 데리고 있는 업주인 경우, 교대율 1.5 나 2.0 이라는 것은 병 등으로 사망한 성 노예가, 예를 들어서 3년후 5명 또는 10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 실적 밖에 안중에 없는 업주가 성 노예의 비용 대비 효과를 소홀히 할 리가 없다.

## 6, 위안부 수에 대한 조선인의 비율

위안부 총수에 대한 조선인의 비율은 정말 많았던 것일까?

①제 15사단 군의부가 1943년 1월에 실시한 특수위안부 검진결과에 따르면, 난징(南京)에 있던 위안부 검사 연인원 수는 일본인 1007명, 반도인 113명, 중국인 513명이었다(자료 A <상>, 387쪽). 총수에 대해 조선인의 비율은 7%가 된다. 반대로 ②1941년 하반기와 1942년 상반기에 한반도에서 북시나, 중시나, 남시나로 도항한 공창은 일본인 53명과 조선인 667명이었다(자료 A <상>, 395,396쪽).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은 약 93%와 약 7%가 된다.

①의 비율로 봤을때 조선인 위안부가 20만명이었다면, 3개국의 위안부의 수는 2,857,142명이 된다. ②의 비율로는 조선인 위안부 20만명에 대해 일본인 위안부는 6,185명이 된다. 상기 2,857,142명과 206,185명에 대해 위안소가 400곳이었다면, 위안소 한 곳당 위안부의 수는 각각 7,143명과 515명인데 ②의 515명에는 중국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①의 비율에 따른 한 곳당 7,143명이라는 것은 실태로서는 전혀 있을수 없는 숫자이다. 만약 ②의 비율에 의한 한 곳당 위안부 515명이 실태에 걸맞는다고 해도 하루당 외출 허가를 받은 병사 515명이, 그들 모두가 같은 한곳 위안소를 이용한다면 장사는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업주는 매일 515명의 위안부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익의 일부를 그녀들에게 나눠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 IV 위안부에 관한 사실

자료 D에는 위안부였던 25명의 증언이 게재되어있다. 여기서는 공창 제도와 그녀들의 증언 내용을 대조토록 하겠다.

### 1, 신분증명서 등

위안부 모집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신문 광고가 이용되었던 사례가 있다(출처: 하타 이쿠히코(秦育彦) 『위안부 문제의 결산 - 현대사의 심원』 2016년, PHP 연구소, 209쪽). 업주는 위안부 본인 또는 친권자와 승낙서나 계약서, 금전차용증서를 교환하고, 고용 기한과 매출에 대한 그녀들의 수익배분을 정하였다. 위안부는 경찰 당국으로부터 공창의 신분 증명서를 발급 받고 전지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관헌에게 그 증명서를 제시해야 했다.

증언자 25명 중에서, 증언이 애매하면서도 신분 증명서를 발급받은적이 있는 사람은 5명(자료 D, <상> 46쪽, 동 <하> 24,83,116,288쪽)이고, 승낙서 비슷한 것에 언급한 사람은 한명(동 <하> 241쪽)이었다. 자신이 팔렸다고 이해했던 위안부는 4명(동 <상>, 83,127,155쪽, 동 <하>, 313쪽)이었다. 약취 유괴나 납치에는 신분 증명서와 승낙서는 필요 없다. 인신 매매라면 돈을 받은 것은 위안부의 부모였던 것일까.

### 2, 위안부의 수입 등

전지의 위안부는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어 권장이든지 아니면 강제이든지 간에 자신의 벌이를 저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송금하고 있었다(출처 : 미즈마 마사노리(水間正憲) 지음 『한눈에 알 수 있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 2014년, PHP 연구소, 78,79쪽 및 1944년 10월

1일자 미국전시정보국심리작전반 『일본인 전쟁 포로 심문 보고서 제 49 호』). 위안부는 매출의 1할 내지 6할이 자신들의 수입이었고 저축에는 이자도 붙었다.

한편, 증언자 25명 중 월급을 받은 사람은 4명(자료 D <하>, 32,115,221,314 쪽), 그 중에서 자기 몫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한명(동 <하>, 32 쪽) 이었다. 한편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업주 등의 유혹을 받아들인 사람은 14 명이 된다(동 <상>, 21,45,104,118,127,167 쪽, 동 <하>, 22,81,117,132,178,241,251,283 쪽). 성 노예가 때로는 용돈을 받을지는 몰라도 성 노예가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증언자 자신이 스스로 유혹을 받아들인 것과 자기 책임의 관계를 떼어 낼 수 없는 것이다.

### 3, 이름을 밝히고 나선 위안부들

#### (1)공창이였는가 사창이였는가

1990년 12월 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설립되자 정대협은 위안부에 이름을 밝히고 나설것을 호소했다. 이듬해 여름부터 110명이 동회에 등록됐으나 정식으로 면담 조사를 한 것은 19명뿐이었다(자료 E). 110명 전원이 규칙이나 통지 등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들이 납치된 뒤 성 노예로 내몰리고 일본의 패전까지 쭉 고통 속에서 허덕였다는 증언은 납득이 간다. 그 경우 그들은 사창이었던 것이다. 한국 측이 위안부의 계약서·수입·저축·가족에게 보낸 송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그녀들은 사창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 (2)증언자의 비율

2017년 12월 19일자 연합뉴스[출처 : 웹 사이트([www.chosunonline.com](http://www.chosunonline.com) 국제 위안부), 2018년 3월 12일 열람]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수는 239명이다. 조선인 위안부가 20만명이었다면 239명은 전체의 약 0.12%밖에 되지 않고 수치가 너무 낮다. 한편으로 추정 위안부 수 5,345명이 실제에 가깝고, 그 중 일본인, 중국인, 대만인, 동남 아시아인 등이 합계 2,955명이었을 경우, 조선인 위안부 수는 2,390명이 되며 그중 10%가 이름을 밝힌 것이 된다. 1990년대 초에 여성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일본 정부를 고발할 여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그녀들의 과거를 감추고 싶은 심정과 평균 여명 그리고 한일 관계의 뒤틀림을 참작한다 해도 10%에 대해 0.12%는 믿기 어려운 숫자이다.

#### (3)보충적 의문

①자료 D의 편찬자의 면담 자세에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전지로 보내진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일관성과 합리성 있는 질문이 이루어졌다는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확실히 위안부가 성 노예로서 받은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을 명백하게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편찬자의 노력은 모두 헛된거 같다. 위안부를 둘러싼 전체상이 단적으로 묘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기억의 애매함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묻고자 하는 요점을 열거한 체크 리스트를 미리 준비했다면 각 증언자에게 공통되는 사실을 더 명백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②자료 D에 따르면 한 위안부는 대만 중서부의 장화(彰化)의 위안소에 있었는데(자료 D <상>, 107 쪽), 매매춘에는 군포가 아니라 현금 거래가 이루어져 민간인도 그 위안소를 이용했다. 이 같은 사실에다 군이 정보 누설에 유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화에 있던 것은 보통 매춘 숙소인 거 같다.

③자료 E는 위안부가 있던 곳의 지도(19 쪽)를 게재하고 지린(吉林)(113 쪽), 오사카(大阪)(245 쪽), 토야마(富山)(286 쪽), 부산(301 쪽)에 이어 신주(新竹), 가오슝(高雄)등을 꼽았다. 이 곳들은 이른바 전지가 아니다. 거기에 있던 것은 역시 시중의 매춘 숙소 였던거 같다.

④자료 E의 19명의 증언은 1993년에 출판되었다. 2010년에 출판된 자료 D는 왜 자료 E에

포함된 6 명의 증언을 굳이 다시 게재한 것일까.

#### 4, 그 뒤의 사실

##### (1) 한국 전쟁 전후

2002 년, 김귀옥 현 한성대 교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 전쟁 전후 한국 정부 및 육군이 2 종류의 위안소를 설치 및 운영했다고 밝혔다. 군이 조달한 한국군 병사용 위안부는 특수 위안대 또는 제 5 종 보급품이라 불리고, 한국을 지원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병사용 위안부는 유엔 위안부나 양공주로 불렸다(출처 : 하타 이쿠히코 지음 『위안부 문제의 결산 - 현대사의 심연』 2016 년, PHP 연구소, 15,51 쪽). 그녀들이 공창이었다면, 여성의 인권 존중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정부에는 그것을 무시한 책임이 생긴다. 성 노예라면 더더욱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2) 베트남 전쟁 당시

2015 년, 야마구치 노리유키 TBS 텔레비전 워싱턴 지국장은 4 월 2 일자 주간문춘(週刊文春)지에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이 자국군 병사(때로는 미군 병사)가 이용하게끔 터키탕으로 불리는 위안소를 설치 운영했음을 밝혔다. 위안부는 모두 베트남인이었다(출처 : 동상, 16,79 쪽). 이 사례에서도 그녀들이 공창이었다면, 여성의 인권 존중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정부에는 그것을 무시한 책임이 생긴다. 성 노예라면 더더욱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V 맺는 말

필자는 상기 자료의 검토 및 이로부터 추정된 위안소 수 491 곳과 위안부 수 5,345 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1, 여성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전지에 위안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되었다. 일본 정부는 설치를 허용한 책임을 져야 할만큼 잘못이 있다.
- 2, 위안소 수 491 곳과 위안부 수 5,345 명은 추정에 불과하지만 사실을 근거로한 타당한 숫자이다. 따라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본 국내의 유식자가 주장하는 위안부 수 2 만명에서 20 만명이라는 추측에는 근거는 없다.
- 3, 공창이 계약을 맺고 수입을 얻었던 것을 고려하면 정대협과 유식자의 위안부가 성 노예였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II.1 에서 인용한 자료 A <상> 「接客업계의 통계」는 한반도 내의 공창 수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는 공창 단속 제도가 단순히 총독부의 구호가 아니라 정착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이 사실과 모순된다. 즉, 여성이 성 노예였다면 업주는 탈법 행위에 의해 그녀들을 알선하고 전지로 데려간 것이 된다. 여성이 공창이었다면 그녀들은 성 노예가 아닌 것이다. 더는 따로 해석의 여지가 없다.
- 4, 공창 제도가 있으면서도 그 제도가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고한 소녀나 여성들을 속이고 납치하여 인신 매매의 대상으로 만든 장본인의 죄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것인가.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만 하면 그로 끝인가. 법률 전문가가 어떻게 반박을 하든지간에,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대상이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5,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상대로 위안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데는 정당성이 있다. 지면의 제한으로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안부 문제가 유엔에 제기된 지금, 한국 정부는 위안부의 실태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

6, 현재 미국의 여러 도시와 필리핀 그리고 독일에도 이른바 위안부비와 위안부상이 설치되어 있다. 지면의 제한으로 본문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설치 당사자들에 대해 위안부의 실태에 관한 상기 사실 관계와 비문 내용의 정합성을 따지도록 권고할 책임이 있다

7, 또한, 본문에서는 크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제 29 번째 단락에서 인용한 요시다 세이지 씨의 저서 『나의 전쟁 범죄 - 조선인 강제 연행』( 1983 년, 삼일책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 여성 강제 연행에 관한 그의 기술이 아사히 신문의 검증에 의해 2014 년 8 월 5 일자 기사에서 “ ‘제주도에서 연행’ 증언은 입증을 얻지 못하고 거짓으로 판단” 으로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맥두걸 보고서의 부속 문서가 언급한 위안부 수 20 만명 이상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상세히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